

2026년 「공동연구회」 참여기업 연장 모집 공고

화성지역 소공인 간의 자발적 협업을 통해 제조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는 2026년 「공동연구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화성상공회의소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6년 「공동연구회」 지원 사업

나. 사업목적 : 소공인 공동연구회 운영을 통한 동종 및 이업종 간의 소공인 협업체계 지원

다. 사업기간 : 2026. 5월 ~ 10월

라. 사업내용 : 공동연구를 위한 디자인 및 설계(가공), 재료비 및 외주비 등 지원

지 원 항 목	주 요 내 용
디자인 및 설계비용	공동연구를 위한 외주 업체에 디자인 및 설계비용 등
원자재 구입비용	공동연구를 위한 재료비 구입비용 등
위탁 외주 가공비용	공동연구를 위한 목업, 3D프린팅, 외주가공 비용 등
시험·분석, 장비임대 비용	공동연구를 위한 장비 임차 및 사용 비용 지원
전문가 자문비 비용	공동연구를 위한 전문가 자문비 지원

※ 단 지원된 사업비의 참여기업간 (신청기업↔협력기업1↔협력기업2) 직접 거래는 불인정

2. 세부 내용

가.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개 공동연구회 (1개 연구회당 3개사 이상)
- 지원대상 : C22,C24~C31업종 10인 미만 소공인(일부지역 제외)

산업분류 코드	주요 업종	산업분류 코드	주요 업종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8	전기 장비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5	금속가공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동탄 1~8동, 병점동,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지역 제외

○ 지원방법

공동연구회 세부 지원 항목(예시)

구분	주요 내용	지원 한도	
공동연구회 지원금 (참여기업)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시설·장비 활용비 (단, 구입불가) ○ 시약·재료 구입비 ○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16~18백만원
	위탁개발비		
	외부 전문가	○ 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자문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 * 외부 인력으로 제한하되, 기존 인원일 경우에는 자부담으로만 인정가능	1~2백만원 (1회 40만원)
	기술서비스 활용비	○ 특허등록, 출원, 제품인증 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	1~2백만원
	기타 비용	○ 위의 열거 되지 않은 항목 중 센터에 사전 승인을 득한 비용	센터 사전 승인
소 계		19.4백만원	
공동연구회 운영비 (센터)	PM 전문가 활동비	○ 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자문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	1.6백만원 (40만원x4회)
	소 계		1.6백만원
총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700만원)		21백만원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

⇒ 지원한도 금액 중 외부 전문가 및 기술서비스 활용비, 기타 비용은 한도금액을 반드시 적용하며 남은 금액은 연구장비 재료비, 위탁개발비에 추가 편성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는 소공인 자부담 (지원불가)

⇒ 공동연구회 운영비는 PM운영 자문비 지원 관련하여 사용되는 금액

⇒ PM 전문가는 센터 컨설턴트 Pool을 활용함.

○ 모집기간 : 5월 11일(월) ~ 5월 20일(수)

※ 모집기준 미달시 모집기한 연장

○ 지원업체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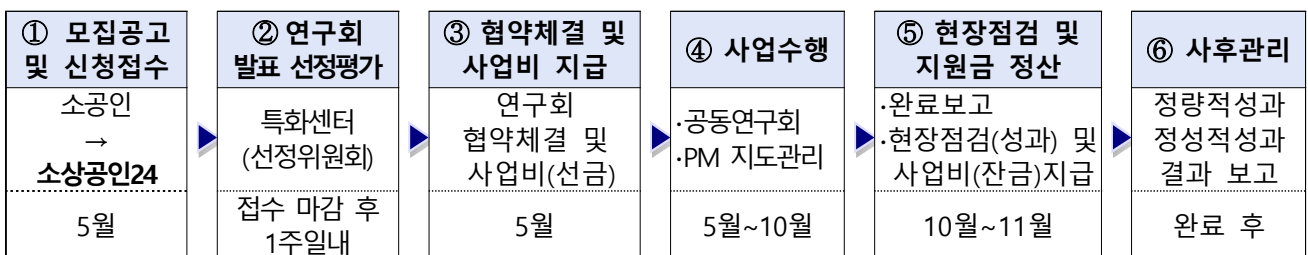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토대로 선정평가
- (정성평가) 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제안서 발표(PT형식, 업체당 15분 발표)

*** (집적지 특성화 지원) 추진계획서 내 화성소공인복합지원센터 또는 화성시 메이커스페이스의 장비 이용한 개발 방안 필수 포함**

○ 지원업체 선정 통보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기업 통보

※ 선정평가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할 수 없음

나. 지원 절차



다. 세부 추진 절차

절차	업무	세부내용
①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소공인) 신청서, 추진계획서 등 서류 준비·작성하여 소상공인24 제출 - (센터)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심사위원 구성
②	선정평가	- (센터) 심사평가 및 발표평가로 지원 소공인 선정 - (센터→소공인) 선정 소공인 대상 선정 통보
③	협약체결 및 선금 지급	- (센터→소공인) · 선정기업에게 지원 사업내용 및 행정절차 설명회 개최 · 선정기업 협약체결 및 선금 지급 (80%)
④-1	사업 수행	- (소공인) · 선정기업별 공동연구회 사업 추진 · 협약일로부터 100일 이내 제품개발 완료
④-2	중간점검 (운영회의)	- (소공인↔PM↔센터) · 연구회별 PM 운영회의 및 중간점검 · 사업추진 진행 단계에서 수시 중간 점검 체크
④-3	완료보고 및 지원금(잔금) 신청	- (소공인→센터) ·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할 것 · 지원금 신청서, 사업 완료 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외주가공비 입금내역 등)
⑤-1	최종검토 (현장점검)	- (센터→소공인) · 견적서 상의 품목과 동일 여부 확인 · 사업장의 적합한 품목인지 적합성 검토 실시
⑤-2	잔금 지급	- (센터→소공인) · 외부회계법인 검토 후 지원금(잔금) 지급 (20%)
⑥	사후관리	- (센터→소공인) 연구 결과물에 대한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세부 추진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라. 지원 제외 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기술개발 지원 사업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 (지원) 중인 업체는 지원 불가 (단, 협약 기간 및 정산 완료 등 최종완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임금체불업체는 지원 불가
 - 사업 선정통보 후 신청서 및 관련 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업체는 지원 불가
 - 선정통보 이전에 선 진행한 제작 건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사전변경승인 없이 공급업체를 변경, 주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원 불가 (센터와 사전 협의 필요)
 -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 지원 불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당해연도 센터 사업에 공급업체로 참여한 업체는 지원 불가
 - 센터 판단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불가
 - 선정 후 중도 포기 업체는 포기 확정일자로부터 2년간 화성시 소공인특화 지원센터 사업 참여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공동기술개발의 실패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거나, 성과 점검 결과 '실패'로 판정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비 정산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가 중단된 경우, 연구 중단 시점까지의 실사용 비용은 외부 기관의 검토를 통해 증빙된 내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불분명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반납하여야 함

마. 지원 유의사항

○ 지원 신청 내용 변경 및 포기

-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 내용 변경, 공급업체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전 센터 협의 없이 지원 포기의 경우 이후 2년간 센터의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공급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공급업체는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업체 중에서 소공인이 직접 복수 견적을 받아 가격이 낮은 업체를 선정
- 당해 센터 사업(마케팅, 컨설팅, 자율사업) 수혜업체는 공급업체로 선정 불가하며, 당해 공급업체 또한 센터 사업에 참여 불가
- 신청서 견적 품목과 관련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함
- 신청업체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조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공급업체 선정 불가
- 납품 관련 이견 사항은 소공인과 공급업체간 해결해야 함

○ 견적서(비교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견적서(비교 견적서) 제출 시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함

구분	필수항목	필수기재사항
1	견적일	사업모집기간 내
2	공급받는자	사업신청 업체명
3	공급하는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날인
4	견적내용	품목, 규격 및 사양,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 원견적서와 비교 견적서에 동일한 품목, 규격, 사양 기입 상호 가격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제출

○ 기업당 사업지원 상한에 관한 사항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및 화성시 시설(센터) 운영 및 자율사업 지원기준(안)에 따름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중 당해 연도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은 해당없음

- 단,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기업의 지원한도를 7백만원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개별 기업의 누적 지원금액 등을 감안하여야 함

구분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성시
지원한도	5백만원	5백만원
해당사업	국내·외 인증 지원 공동 국내박람회 참가, 공동연구회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브랜드 이미지 제작 지원,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카탈로그 제작 지원, 홈페이지 제작 지원, 시제품 개발 지원, 산업재해 예방 지원, AI 마케팅 지원

○ 사업비는 직접성 경비만 지원가능 (인건비 및 간접성 경비 불인정)

- 직접성 경비 운영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운영 요령 등에 관한 규정 내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본사업에서 인정하는 세목으로 개발비에 대한 비목별 계상기준 인용
(예시 : 재료비, 외주가공비, 외부기관 시험비, 기술 수집비, 세미나, 전시회, 전문서적구매비 등 전문가 활용비 인정)

3. 신청 안내

가. 신청 방법 :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나. 신청 기간 : 5월 11일(월) ~ 5월 20일(수)

다. 신청 서류

1)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 협력기업)	
①	[서식1] 사업 신청서 1부 (신청기업)
②	<공통1> 개인정보 제공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1부(양식)
③	<공통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④	<공통3>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명시 必)
⑤	<공통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4년~25년) 1부
⑥	<공통5>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공통6> 주업증명(업종코드) 조회 화면 인쇄본(서명 필수) 각 1부 (국세청 홈텍스)
⑧	<공통7>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각 1부 (양식)
⑨	<공통8> 견적서, 비교견적서 각 1부
⑩	[서식2] 추진계획서 (소공인 공동연구회 개발 계획서) 1부 (신청기업)
⑪	[서식3] 협약서 1부
⑫	[서식4] 지원 사업 대상 선정 평가 기준표 1부 (신청기업)

※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동의시 제출서류 일부 대체가능

2) 선정 승인 이후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 협력기업)	
①	[서식5] 지원금(선금) 신청서
②	<공통9> 선급금이행보증증권 1부 (지원금 중 8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증권)
③	<공통10> 선정기업 통장사본 각 1부
④	[서식6] 완료보고서(제작 과정 사진 첨부)
⑤	[서식7]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1부 * 아래의 증빙자료 포함 - 전자 세금계산서 각 1부 - 지원금, 자부담 송금확인증 각 1부(부가세+지원금 초과 금액) ※ ①지원금, ②자부담 & 부가세 구분 입금 권장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공급업체 통장사본 각 1부 - 공급업체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각 1부
⑥	[서식8] 지원금(잔금) 신청서

4. 접수 및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F.A.X.	접수처
김예진 매니저	031-354-3641	031-354-3642	소상공인24